

더 안전한 운행, 더 편리해진 검사!

# 자격유지검사 · 의료적성검사 제도 개선 안내

##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제도 현황

구분	(공단) 자격유지검사	(병·의원) 의료적성검사
법적 근거	▶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	
대 상	▶ 만 65세 이상 버스·택시·화물차 운전자	▶ 만 65세 이상 택시·화물차 운전자
시행 기관	▶ 한국교통안전공단	▶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병·의원
검사 주기	▶ 만 65세 ~ 69세(매 3년), 만 70세 이상(매 1년)	
검사 장소	▶ 전국 19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	▶ 전국 약 70개소 병·의원
검사 항목	▶ 7개 항목(시야각, 도로찾기, 추적, 복합기능, 신호등, 화살표, 표지판)	▶ 8개 항목(혈압, 혈당, 시력, 시야각, 인지, 미로, 걷기, 악력)

# 자격유지검사·의료적성검사 제도 개선 안내

## ①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 강화

**현행** 전체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 시 부적합

**개선** 전체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 이거나  
사고 관련성 높은 4개 검사항목<sup>○</sup> 중 2개 이상 4등급 시 부적합

① 검사항목 : 시야각, 도로찾기, 추적, 복합기능

## ② 병·의원 의료적성검사 대체검사 제한

**현행** 택시·화물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 중 택일

**개선** 최근 3년간 중상사고(여객 3주, 화물 5주 이상) 발생하였거나,  
최근 1년간 벌점 81점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불가

## ③ 재검사 기간 강화(자격유지검사, 의료적성검사 통합적용)

**현행**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횟수 제한 없이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

**개선** 3회차부터 30일 이후 재검사 가능,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

① 1회차 - 14일 뒤 → 2회차 - 30일 뒤 → 3회차 - 30일 뒤 → 4회차(신규검사 기준)

## ④ 혈압, 혈당 수치가 높은 위험운전자는 추적관리

**대상** (혈압) 수축기 140~160 미만, 이완기 90~100 미만 / (혈당) 6.5~9% 미만

**검사** 추적관리 대상은 6개월 주기로 추가검사 시행 후 결과 등록

## ⑤ 의료적성검사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 단축

**현행** 65세~69세(1년), 70세 이상(6개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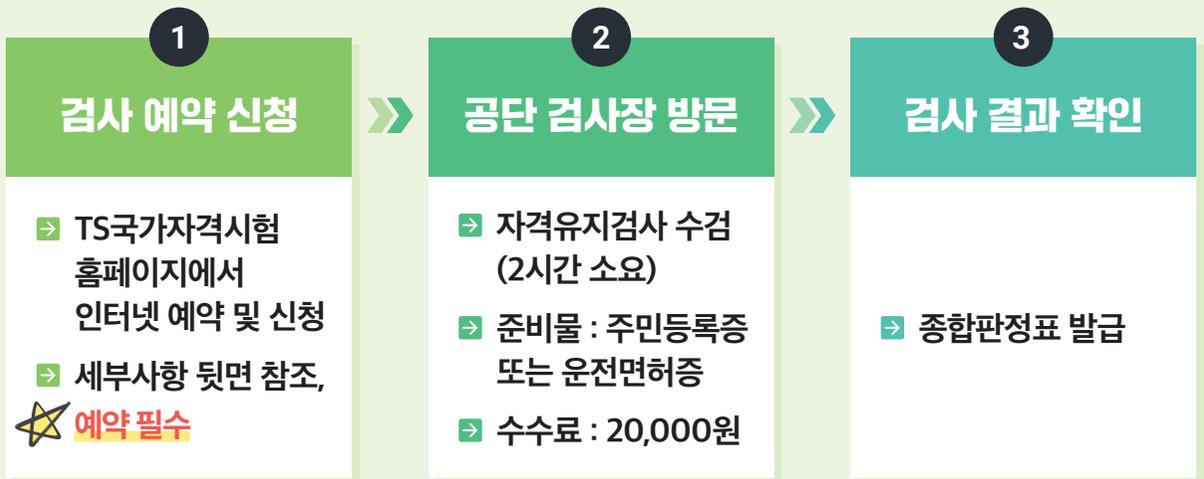
**개선** 65세~69세(6개월), 70세 이상(3개월)

## ⑥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지정제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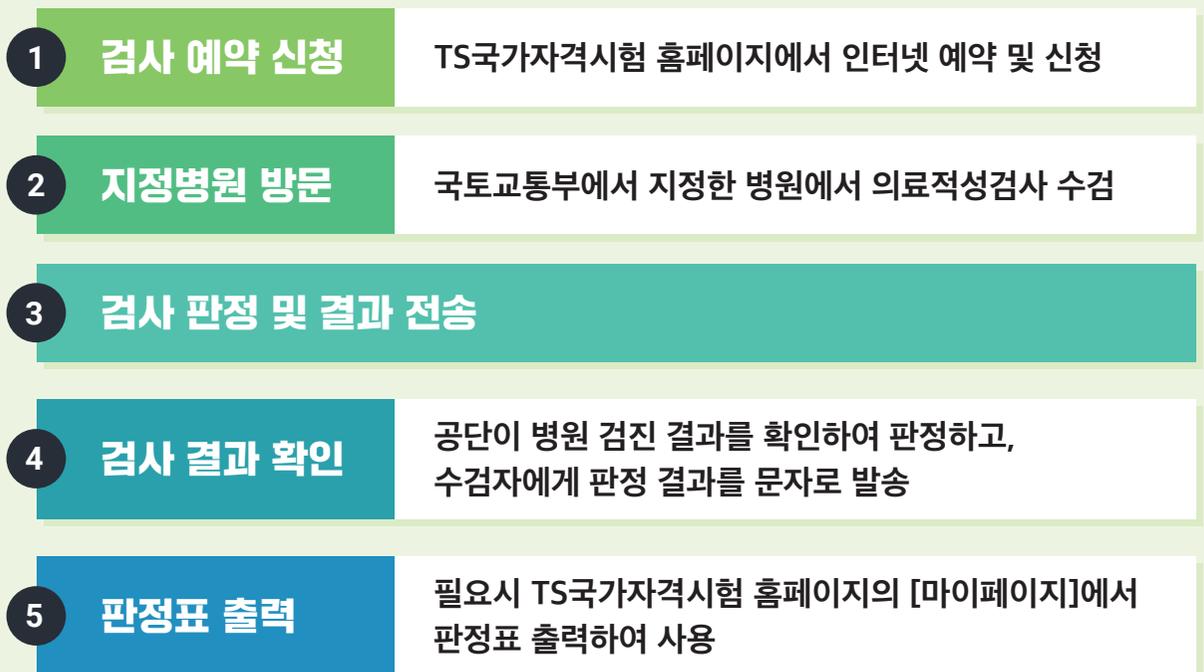
**현행** 검사장비 및 인력을 갖춘 병·의원은 별도 제한 없이 검사 수행

**개선**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병·의원에서만 검사 수행

## ✓ (공단) 자격유지검사 예약 및 수검 절차



## ✓ (병·의원) 의료적성검사 예약 및 수검 절차



**편리한 제출** 검사 결과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자동 전송되므로, 운수종사자가 직접 공단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 ✓ 자격유지검사(의료적성검사) 예약 절차 안내

잠깐!

앞으로는 병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 
한국교통안전공단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

인터넷 “TS국가자격시험” 검색  
또는 “https://lic.kotsa.or.kr” 입력

2

운전정밀검사 예약 ▶ 의료적성검사 ▶ 업종선택

3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▶ 병·의원 조회 후  
선택하여 예약

4

신청서 작성 및 판정수수료 결제  
(신용카드, 실시간 은행계좌이체, 가상계좌)  
의료기관 검진비 별도

운전적성정밀검사  
예약 페이지로  
바로 이동하는 QR코드



# ✓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 신청



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 
알림문자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



수검 대상이 되면  
알림을 발송하는 서비스